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21. 2. 16.> (앞 쪽)

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					처리기간 15일 (다만, 구조성능 시험확인서 첨부 시는 5일)
신청인	성 명 (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			
	전화번호		생년월일		
	주 소				
사업장 소재지	본 사				
	공 장				
건설기계명			건설기계 형식 및 규격		
원동기형식			제 작 일 자	. . .	
형식승인번호			형식승인일자	. . .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9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
검사대행자

구비서류	수수료
○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(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정한다)	○ 최초신청: 415,800원 ○ 변경신청: 293,700원 ※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서 첨부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

(뒤 쪽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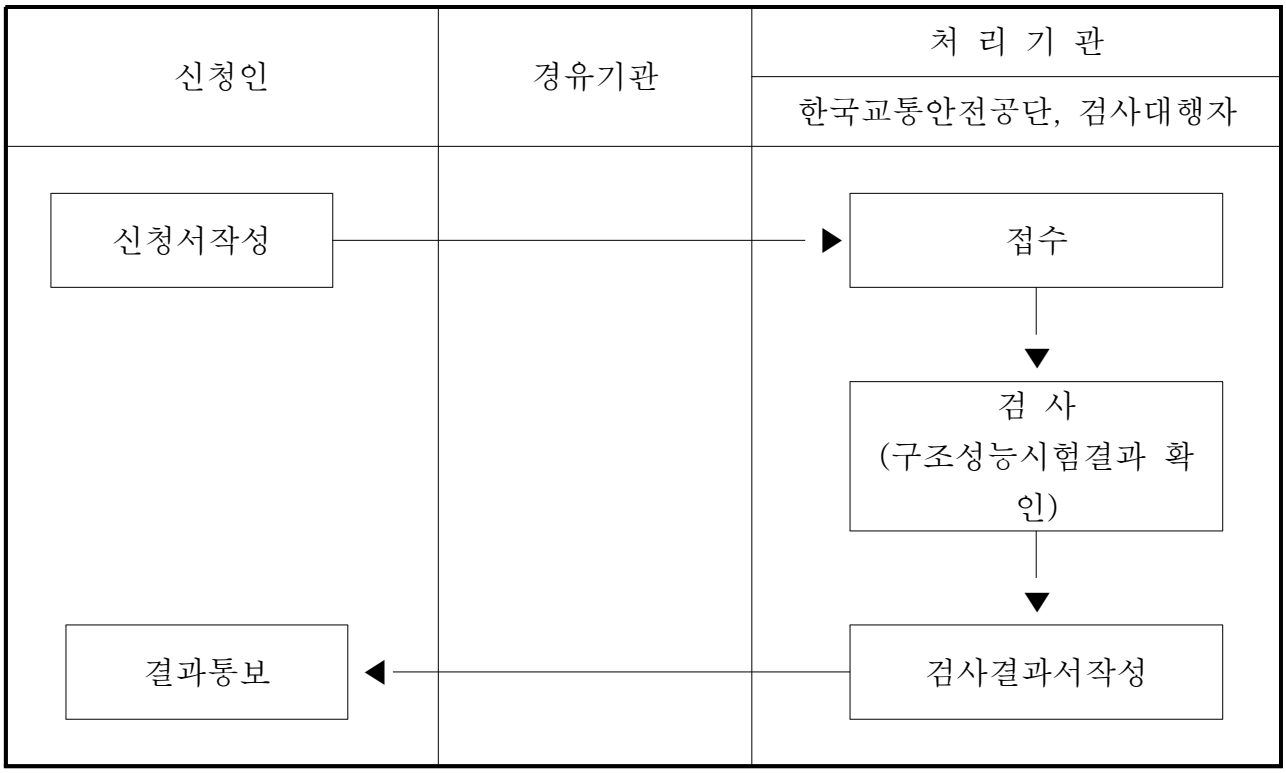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